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지원내용) ① <u>구청장은 제4조의 서비스를 1일 4시간이내, 최대 12회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서비스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중복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임신부에게는 횟수 등 서비스의 일정 부분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<u>구청장은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,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서비스의 지원) <u>제4조 및 5조의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제5조(지원내용) ① ----- ----- 6 <u>회까지 -----.</u> 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제6조(서비스 제공기관) ① <u>구청장은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제4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(이하 “서비스 제공기관”이라 한다.)을 선정해야 한다. 단,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서비스의 지원) <u>서비스 -----</u> ----- ----- -----.</p>